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30(수)

문화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4. 09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4. 10

라. 상정일자 : 2014. 4. 30 (제21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2014 인천AG경기장의 신설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최저 사용료 기준 마련.(안 제11조)

-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출근거를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35로 완화하여 정함.(안 제13조)
- 체육시설의 위탁기간(3년→5년) 범위를 조정하고, 위탁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위탁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25조)
- 인천AG경기장의 신설에 따라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전용 사용료·이용료·방송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6, 별표 8)

###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안배경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정하고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이 신설됨에 따라 체육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이용료, 방송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탄력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 내용

##### ○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포함(안 제10조)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사용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체육시설 중 관람석(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자 및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최저 사용료 기준 마련 등(안 제11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관람권 사용료가 제15조제2항에 의한 입장료(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음.

현재 인천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체육 경기 및 공공행사, 문화·공연행사,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등 행사 종류에 따라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5%를 관람권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람입장료로 500원을 징수하고 있음<sup>1)</sup>.

아울러,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2%를 징수하고 있는 문화·공연행사의 관람권 사용료를 관람석 규모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10%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임.

---

1) 예를 들면 A단체가 체육행사(경기)를 위해 금액이 10,000원인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권 사용료로 1,000원(10%)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이 4,000원인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람입장료 500원보다 적은 400원을 납부하게 되는 방식임.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관람권 사용료가 관람입장료(500원)보다 적게 나오도록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례(삼산월드체육관, 도원체육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제2항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2. 문화·공연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2/100로 한다.	2. 문화·공연행사 : 관람석 6,000석 이상인 경우에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으로, 3,000석 이상인 경우에는 8/100로, 3,000석 미만인 경우에는 6/100으로 한다.

관람권 사용료 인하로 시 세입의 일부가 감소<sup>2)</sup>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문화공연을 통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사용자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문화·공연행사의 활성화와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임.

### 〈타 시·도 관람권 사용료 징수 현황〉

구 분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현황
인천 (현행)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문화 및 공연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2/100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
인천 (개정안)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문화 및 공연행사 가. 관람석 6,000석 이상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나. 관람석 3,000석 이상 6,000석 미만 : 관람권 수입 총액의 8/100 다. 관람석 3,000석 미만 : 관람권 수입 총액의 6/100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
부산	·관람금액의 100분의 10을 관람권 발행에 따른 이용료로 징수(행사종류에 따른 구분 없음)
대구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 : 관람권 대표액의 10퍼센트 ·기타행사 : 관람권 대표액의 15퍼센트
광주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와 프로경기 :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0 ·일반행사 :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2
대전	·프로경기 및 체육행사 :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 행사 :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2.5
울산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행사종류에 따른 구분 없음)

2) 2013년 대비 약 5백만원 정도 감소 예상  
- 삼산월드체육관 △390만원, 도원체육관 △110만원

## ○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확대 등(안 제13조)

안 제13조는 군·구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소속 운동경기부가 훈련하는 경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체육시설 내 사무실 등의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에 1천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관련,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면이 가능할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sup>3)</sup>에서는 사용료 감경이 필요한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개정안의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3)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현재 인천시가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행사종류에 따라 10~50%까지 사용료를 감경하고 있으나, 운동경기부는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감경 요율인 80%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기관에서 감경 요청이 있었으며 인천시에서도 군·구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13조제4항1호(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용어 선택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대한체육회 등 3개 단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도 감경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는 없음. 그러나,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대한체육회 등 3개 단체의 “지역단체”인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50% 범위에서 감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상위법을 인용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체육회 등의 단체가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해당 조문 중 “해당 단체의” 를 “해당 지역단체와” 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2.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p>	<p>④ ----- -----.</p> <p>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등에서 정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p> <p>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p> <p>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p> <p>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1. ----- (해당 지역단체와)----- ----- -----</p> <p>가. ~ 다. (개정안과 같음)</p>

**나. 사용료 요율 완화 관련,**

안 제23조제7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에 1천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신설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연간 사용료로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에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요율을 규정하고 있음.

결국, 개정안은 기존에 적용하던 사용료 요율을 5%에서 3.5%로 인하는 것으로 이는 2014 AG 신설경기장 내 사무실 등을 임대할 경우 사용료 요율 완화를 통해 공실율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경기장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 체육시설 위탁기간 조정 등(안 제25조)

안 제25조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의 갱신 및 절차 등 위탁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에도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위탁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안 제25조제6항의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먼저 “연고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임대권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拂下)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 공유 재산을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 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음.(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결국, 개정안 제6항은 인천시가 체육시설을 매각할 경우에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시립체육시설은 「공유재산<sup>4)</sup>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으로 필요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과는 달리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이므로, 체육시설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염두해 둔 제6항은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임.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등 정비(안 별표1~3, 별표6, 별표8)**

안 별표1~3, 별표6, 별표8에서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신설된 경기장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이용료, 방송사용료, 부속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는 사항임. 신설경기장 사용료에 관하여는 인천시가 타 시·도 경기장 사용료와 비교·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설경기장 시설 규모, 수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를 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공유재산 :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구 분		종 류
공유재산	공공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 청사, 관사, 박물관, 학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 도로, 하천, 항만, 주차장, 공원, 제방, 지하도, 광장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 병원,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필요에 따라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박승희, 신현환, 강병수, 안영수 위원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4항제1호 중 “해당 단체의” 를 “해당 지역단체와”로 한다.

안 제25조제6항을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②(생략) <u>&lt;신설&gt;</u></p>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군·구 소속 운동경기 부 및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소속 운동경기부가 훈련하는 경우는 사용료 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 면할 수 있다.</u></p> <p>④ ----- ----- -----.</p> <p>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등에서 정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 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 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 생활체육회</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1. ----- (해당 지역단체와 ----- ----- ----- ----- 가. ~ 다.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2.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 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u></p> <p>&lt;신 설&gt;</p> <p>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u>어린이, 노인</u>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p> <p>2. (생략)</p> <p>⑤ (생략)</p> <p>&lt;신 설&gt;</p>	<p><u>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u></p> <p><u>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u></p> <p>⑤ ----- ----- -----.</p> <p>1. <u>어린이</u>를 ----- -----</p> <p>2.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u>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u>」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에 1천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p>⑥ (개정안과 같음)</p> <p>⑦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5조(위탁관리)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25조(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 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 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 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 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 탁 또는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p> <p>⑥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없다.</p>	<p>제25조(위탁관리)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⑤ (개정안과 같음)</p> <p>&lt;삭제&gt;</p>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람권 사용료가 제15조제2항에 의한 입장료 보다 적을 때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문화·공연행사

가. 관람석 6,000석 이상: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나. 관람석 3,000석 이상 6,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8/100

다. 관람석 3,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6/100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구 소속 운동경기부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소속 운동경기부가 훈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지역단체와 정관·규약 등에서 정한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제13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1호 중 “어린이, 노인을”을 “어린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에 1천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제1호 관련)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육상·축구 각종행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보조경기장	육상·축구 각종행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2	문학야구장		야 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3	도원체육관		농구·배구·핸드볼 등 각종경기및행사	인천광역시 중구 셋골로 41번길 10
	도원수영장		수 영	인천광역시 중구 셋골로 41번길 22
4	인천삼산월드 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농구·배구 등 각종경기및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보조경기장	농구·배구 등 각종경기및행사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5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99
6	가좌테니스장		테 니 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11번길 7
7	궁도장	계산궁도장	국 궁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7
		수봉궁도장	국 궁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 95번길 32
8	수봉양궁장		양 궁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 95번길 32
9	인천국제벨로드롬		싸이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3길 11
10	다목적운동장		하키, 정구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360
11	인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및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
12	인천계산국민체육센터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및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길 580
13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풋살·야구 각종행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
14	송도 LNG 야구장		야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1190
15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 구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6	송림체육관	생활체육관	배구·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 30
		수영장	수 영	
17	문학박태환수영장		수 영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18	열우물테니스 /스쿼시경기장	경기장	테니스 /스쿼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수영장	수 영	
19	계양체육관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생활체육관	배드민턴·양궁·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양궁장		
20	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생활체육관	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럭비경기장		
21	강화고인들체육관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생활체육관	태권도·BMX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BMX경기장		
22	선학체육관 /선학하키경기장	생활체육관	복싱·하키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하키경기장		
23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	종합운동장	종합 체육시설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378
24	옥련국제사격장		사 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별표 2]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도원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800,000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야간	450,000	675,000	900,000	1,200,000				
도원체육관	주간	70,000	110,000	240,000	36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야간	105,000	165,000	360,000	540,0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팅장	70,000	90,000	90,000	110,000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피겨스케이팅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키장								
가좌 테니스장	주간 2시간	실내	20,000 (코트당)	30,000 (코트당)	40,000 (코트당)	50,000 (코트당)			
		실외	10,000 (코트당)	15,000 (코트당)	20,000 (코트당)	25,000 (코트당)			
인천월드컵 경기장(문학경기장)	육상장	100,000	150,000	300,000	450,000	* 축구(풋살장), 실내 야구 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프로경기는 제외)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문학야구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인천삼신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130,000	200,000	300,000	400,000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보조경기장	30,000	50,000	100,000	150,000				
	축구장	50,000	100,000	100,000	140,000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주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 부대 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 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보조 경기장	50,000	80,000	100,000	15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40,000	60,000			
	야구장	주경기장	60,000	90,000	120,000	180,000			
		보조 경기장	40,000	60,000	110,000	160,000			
		실내 연습장	70,000	100,000	140,000	210,000			
송도 LNG 야구장	야구장	40,000	60,000	80,000	120,000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사이클	200,000	200,000	300,000	300,000				
다목적운동장	구 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장구코트(면당)	20,000	30,000	25,000	40,000	35,000	60,000	45,000	70,000
	하 키	60,000	90,000	9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24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송림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 계양테니스장은 열 우물테니스경기장 사 용료 적용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계양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양궁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강화고인들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	BMX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선학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선학하키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문학박태환수영장	경영풀	주간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연습풀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다이빙풀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열우물테니스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서브코트	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실내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5,000	35,000	50,000	65,000	
	실외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15,000	20,000	25,000	35,000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열우물스쿼시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3시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단복식 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별표 3]

## 체육시설 이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기 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도원수영장	1회		일반 3,000 군인· 청소년 2,500 어린이 2,000	일반 2,7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8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가좌테니스장	1회 1시간 (실내코트)		일반 5,0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800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200 어린이 2,200	
	1회 1시간 (실외코트)		일반 2,500 군인· 청소년 2,000 어린이 1,400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600 어린이 1,1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주간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1,200 군인· 청소년 700 어린이 500	
	야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수봉양궁장	1회 2시간		2,100	1,400	
수봉궁도장 계산궁도장	1회 2시간		1,400	1,000	
인천국제벨로드롬	1회 1일		일반 7,000 학생 5,000		
다목적운동장	정구코트	1 회			
		주간	1,000	3,000	
		1시간	야간	1,500	4,500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일반	일반	* 계양테니스장은 열우물테니스경기장이 요금 적용
	계양체육관		3,300	2,600	
	남동체육관		군인·	군인·	
	강화고인돌체육관		청소년	청소년	
	선학체육관		2,200	1,800	
			어린이	어린이	
			1,100	900	
수영장	문학박태환수영장	1회	일반	일반	
	송림체육관		6,000	4,800	
	열우물경기장		군인·	군인·	
			청소년	청소년	
			5,000	4,000	
			어린이	어린이	
			3,000	2,400	
열우물테니스경기장		1회 1시간 (실내코트)	일반	일반	
			6,000	4,800	
			군인·	군인·	
			청소년	청소년	
			5,000	4,000	
			어린이	어린이	
			3,000	2,400	
		1회 1시간 (실외코트)	일반	일반	
			3,000	2,400	
			군인·	군인·	
			청소년	청소년	
			2,500	2,000	
			어린이	어린이	
			2,000	1,600	
열우물스쿼시경기장		1회 1시간	일반	일반	
			8,000	6,400	
			군인·	군인·	
			청소년	청소년	
			6,000	4,800	
			어린이	어린이	
			4,000	3,200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		1회	일반	일반	
			7,000	5,600	
			학생	군인·	
			5,000	4,000	
잔디 구장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1회	일반	일반	
			3,300	2,600	
	군인·		군인·		
			청소년	청소년	
			2,200	1,800	
			어린이	어린이	
			1,100	900	

[별표 6]

## 체육시설 방송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비 고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중 계 방 송	체육경기	40,000	30,000	20,000	15,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체 육 외 행 사	70,000	60,000	30,000	21,000	
녹 화 촬 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의 반액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방송과 동일				
전 기 료		기본사용료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도원체육관		40,000				
도원수영장		50,000				
가좌테니스장		70,000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70,000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80,000				
	보조경기장	60,000				
문학야구장		7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8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70,000				
다목적운동장		70,000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70,0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80,000				
송림체육관, 문학박태환 수영장, 열우물테니스/스쿼시 경기장, 계양체육관/계양 아시아드양궁장(계양테니스장), 남동체육관/남동아시아드러비 경기장, 강화고인돌체육관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선학체육관/선학하키경기장	주경기장	80,000				
	보조경기장	60,000				



[별표 8]

## 부속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비 고
전 광 관	1일 기본료(60,000)+(전광관주변압기 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30)+ 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야구장 전광관과 타워를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 수용기본료 1개만 적용
냉·난방	전기 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 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LNG 연료비 (시간당 60,000)	체육관 냉·난방 및 천 정조명 시설을 동시 사 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천 정 조 명	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 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조 명 탑	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 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의자(접이식)	1,000	1회 1개
탁자	1,000	1회 1개
샤워시설 이용	1,000	1회 1명
개인 사물함	3,000	1월 1개
그 밖의 시설	시장이 따로 정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 ① 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8까지와 같이 <u>한다</u>.</p> <p>② ~ ⑤ (생략)</p> <p>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문화·공연행사 : 관람권 수입</u></p>	<p>제10조(사용료) ① ----- ----- -----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이용료,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 ----- ----- ----- . 다만, <u>관람권 사용료가 제15조제2항에 의한 입장료보다 적을 때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문화·공연행사</u></p>

현행	개정안
<p><u>총액의 12/100로 한다.</u></p> <p>3. (생략)</p> <p>③ (생략)</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u>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u></p>	<p><u>가. 관람석 6,000석 이상: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u></p> <p><u>나. 관람석 3,000석 이상 6,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8/100</u></p> <p><u>다. 관람석 3,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6/100</u></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군·구 소속 운동경기부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소속 운동경기부가 훈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u></p> <p>④ ----- -----.</p> <p>1. <u>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지역단체와 정관·규약 등에서 정한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u></p> <p><u>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u></p>

현행	개정안
<p>2.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p> <p>&lt;신설&gt;</p> <p>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p> <p>2. (생략)</p> <p>⑤ (생략)</p> <p>&lt;신설&gt;</p>	<p>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p> <p>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p> <p>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p> <p>⑤ ----- -----.</p> <p>1. 어린이를 ----- -----</p> <p>2.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에 1천</p>

현행	개정안
<p>제25조(위탁관리)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u>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u></p> <p>제25조(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